

부산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「부산 해양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」 공고문

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해양기업의 R&D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실증(PoC) 기회 제공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「부산 해양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9월 3일
(재)부산경제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명) 2026년 부산 해양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
- (사업목적) 지역 해양기업의 R&D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실증(PoC) 기회 제공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
- (사업기간) 2026. 9. ~ 2026. 12.
- (지원규모) 3개사 내외 지원
- (사업대상) 부산시 관내 본사가 있는 해양산업(조선기자재, 친환경선박, 스마트 해양, 물류, 항만, 수산물 등) 영위 중소·중견·벤처기업
- (지원금액)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차등 지원(10~20백만원)
- (주요내용) R&D지원 및 실증(PoC) 지원 중 택 1
 - **R&D 지원** 신제품·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 - **실증(PoC) 지원** 개발 완료(또는 개발 중) 기술·제품의 현장 실증·검증비용 지원

□ 지원내용

○ (지원분야)

분야	주요대상	예시(안)
R&D 지원	자체 R&D 역량을 강화하고 신제품 설계 및 기술 상용화를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	· 친환경 선박 부품 및 소재 국산화 설계 · 조선기자재 핵심부품 경량화·고성능화 기술개발 · 대체연료(암모니아·수소 등) 추진 시스템 요소기술 개발 · 인공지능(AI) 기반 해양 물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 · 스마트 항만 하역장비 보조 시스템 시제품 제작 · 수산물 신선도 유지·가공 기술 및 스마트 양식 설비 개발
실증(PoC) 지원	신기술제품 개발을 완료(또는 진행 중)하여, 현장 적용 실적 확보 및 본격적인 사업화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	· 항만 터미널 내 개발 완료된 자율주행 야드트랙터 현장 테스트 · 실선 운항 선박에 스마트 관제 솔루션 설치 및 성능 검증 · 조선기자재 신소재·부품의 실선 탑재 내구성 검증 ·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항만·창고 현장 파일럿 운영 · 해양 특수장비의 연안·해역 작동 평가 및 인증 취득

○ (지원금액)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차등 지원(10~20백만원)

지원금	사업비 비율(공급가액 기준)	
	지원금	기업 자부담금
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*평가 후 차등 지원(10~20백만원)	총 사업비의 90% 이내	총 사업비의 10% 이상(현금)

○ (지원내용) R&D지원 및 실증(PoC) 지원 중 택 1

- **R&D 지원** 신제품 ·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

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비 및 시제품 제작 직접 지원을 통해
기업 자체 R&D 경쟁력 확보 및 기술 집약형 해양기업 육성

- **실증(PoC) 지원** 개발 완료(또는 개발 중) 기술 · 제품의 현장 실증 · 검증비용 지원

현장 실증 및 성능 시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하여 신기술 검증 이력을 확보하고
향후 중앙부처 사업 및 민간 투자 연계 기반 마련

○ (지원항목)

분야	구분	지원항목
R&D지원	시제품·설계비	시제품 설계 및 제작비 · 연구용 재료/부품 구입비 · 디자인 개발비
	기술도입·외주비	설계 S/W 구매 및 라이선스비 · 외주용역비 · 기술 자문 등 기술개발활동비
	인건비	내부 연구 인건비
	권리화·검증비	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·등록비 · 시제품 성능시험·분석비
실증(PoC) 지원	실증 인프라비	실증 장비 임차 및 현장 구축비 · 현장 테스트 운영비
	인증·평가비	성능 시험평가 및 공인 인증 취득비
	데이터·개선비	실증 데이터 수집·분석비 · 실증 결과 보완을 위한 시제품 수정비
	활동비 및 안전관리비	기술 자문 등 기술개발활동비, 실증 현장 안전보험료

※ 실증(PoC) 수행에 필요한 실증처 및 실증 인프라는 신청기업이 직접 확보

2

모집개요

- (신청기간) 2026. 9. 3.(목) ~ 9. 17.(목) 18시까지
- (신청방법) E-mail 접수(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 - 접수 이메일(✉ djsrb0810@bepa.kr)
 -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 - ※ 예시) '부산 해양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_업체명.zip'
 - 신청서 제출 후 유선으로(☎ 051-600-1716) 접수확인 필수
 - ※ 접수가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-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유의사항
1	[서식1] 사업 신청서 1부	◦ PDF(인감날인O) 및 HWP(인감날인X) 파일 모두 제출
2	[서식2] 사업 계획서 1부	
3	[서식3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	
4	[서식4]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1부	
5	[서식5]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1부	
6	사업자등록증 1부	
7	(해당시) 벤처·선도·향토·서비스강소기업 등 기업 인증서 1부	◦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분
8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- 국세 완납 발급처 : 국세청 홈택스(온라인), 세무서 - 지방세 완납 발급처 : 정부24(온라인), 구청, 주민센터	◦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분
9	2024, 2025년 표준재무제표 사본 각 1부 ※ 감사, 발급 기관 등의 날인 포함	
10	2025, 2026년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각 1부 - 발급처 링크 바로가기 : 근로복지공단	◦ 2025년 : 2025.12.31.~2025.12.31. 기준 ◦ 2026년 :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

- (문 의 처)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기업성장팀
- ☎ 051-600-1716, djsrb0810@bepa.kr

3

세부 추진계획

□ 사업 추진절차



□ 평가일정 및 기준

【 1차 서류평가 】

- (평가일시) 2026년 9월 4주 예정
- (평가방법) 사업계획서 서류평가
 -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
 -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발표자료(ppt) 제출 별도 안내
 - 최종 지원업체 수의 2배수 내외에서 선정
- (평가자) 평가위원회(정성평가, 5명 내외) 및 사업 담당자(정량평가)
- (평가기준) 정성평가(90) + 정량평가(10), 최고·최저점 제외

평가항목			평가내용							배점
정성 평가 (90)	기업 역량(10)		◦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전문성 등 - 운영체계, 사업의지, 기술보유역량, 전담인력 여부 등							10
	사업계획 우수성 (40)	필요성	◦ 기술개발·실증 추진의 필요성 및 목표 수준의 타당성							10
		사업계획 타당성	◦ 추진전략의 논리성 및 실행 로드맵의 구체성							20
		사업비 적정성	◦ 사업비 비목별 구성의 합리성 및 규모 적정성							10
	기술 차별성 (30)	기술 혁신성	◦ 제안 기술의 독창성 및 신기술 활용 가능성 - 개발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성, 신기술 접목 등							20
		성공 가능성	◦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등 - 개발 과제 실현가능성, 사업화 구체성 등							10
	기대효과(10)		◦ 참여기업의 매출·고용 견인효과 ◦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지역 파급효과							10
정량평가 (10)		매출 증가율 (5)	◦ 최근 2개년 매출액 증가율(2024→2025년)						5	
			구분	30% 이상	20% 이상 30% 미만	10% 이상 20% 미만	0% 이상 10% 미만	0% 미만		
			배점	5	4	3	2	1		
		신규 고용인력 (5)	◦ 최근 2개년 신규 고용 인원(2025→2026년)						5	
			구분	5명 이상	3~4명	1~2명	고용 유지	고용 감소		
배점	5		4	3	2	1				
가점(최대 1개 인정)			◦ 벤처·선도·향토·서비스강소기업 등 기업 인증							+5
합계										100

※ 동점기업 발생 시 ① '기술혁신성' → ② '사업계획 타당성' 득점 높은 순으로 선정

【 2차 발표평가 】

- (평가일시) 2026년 10월 1주 예정
- (평가방법) 발표평가(PT) 및 질의응답
 -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(3개사)
- (평가자) 평가위원회 구성(5명 내외)
- (평가기준) 정성평가(100), 최고·최저점 제외

평가항목		평가내용	배점
정성평가 (100)	기업 역량 (10)	◦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전문성, 추진의지 등	10
	사업계획 타당성 (80)	◦ 과제 목표의 명확성과 세부 실행계획의 완성도	30
		◦ 제안 기술의 차별성 및 기술 혁신성	30
		◦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및 실현가능성	20
	사업 기대효과 (10)	◦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가능성 ◦ 성과 확보 및 파급효과	10
합계			100

※ 동점기업 발생 시 ① '사업 경쟁력 및 기술 혁신성' → ② '사업계획 필요성 및 구체성' 득점 높은 순으로 선정

【 최종평가 】

- (추진일정) 2026년 12월 예정
- (평가방법) 발표평가(PT) 및 질의응답
- (평가자) 평가위원회 구성(5명 내외)
- (평가내용) 추진 성과, 과제 수행 결과 및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
 -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, 집행된 사업비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음
- (평가기준) 정성평가(100), 최고·최저점 제외

평가항목		평가내용	배점
정성평가 (100)	목표달성도 (30)	◦ 과제 목표 대비 실제 달성 수준	20
		◦ 과제 수행 성실도	10
	결과물의 구체성 (50)	◦ 당초 계획 대비 결과물의 완성도	20
		◦ 결과물의 상품성 및 사업화 가능성	20
		◦ 결과물의 향후 확장·고도화 가능성	10
	결과물의 기대 효과 (20)	◦ 기업의 성장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(매출 증대, 고용창출 효과, 우수 사례 확산 등)	20
합계			100

【 사업비 정산 】

- (추진일정) 2026년 12월 예정
- (정산방법)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선정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
-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류평가 전 탈락 처리됨
- 공고내용 미숙지, 제출자료 누락, 사업계획서 양식 미준수, 기입 내용 오류 등 신청업체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
- 평가 절차 및 기준, 일정 등 사업 세부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PT 발표자료 등 발표평가 요청할 예정임
-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기업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추진이 저조한 경우, 중간 점검 등을 통해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
- 협약 이후에라도 신청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협약체결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사업 최종평가 보고회 평가 결과, 60점 미만 점수를 받은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은 미지급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참고1

사업비 세부 사용항목 및 증빙서류

□ R&D 지원

비목	비목 정의
	증빙서류
시제품·설계비	사업계획서상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직접 필요한 시제품 설계·제작비, 연구용 재료·부품 구입비, 디자인 개발비
	○ 세금계산서(카드 영수증), 거래명세서, 견적서, 계약서(필요시), 이체확인증 ○ 제작 결과물, 시제품 사진, 설계도면, 검수조서 등 ※ 양산·판매 또는 재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비용은 집행 불가
기술도입·외주비	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 설계·개발·분석 등을 외부 전문기관·기업에 의뢰하거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· 설계 S/W 구매 및 라이선스비, 외주용역비, 기술자문 등 기술개발활동비
	○ 계약서, 과업지시서 또는 수행계획서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○ 용역 결과보고서, 개발 결과물, 검수조서 등 ○ S/W 구매·라이선스의 경우 계약서, 구매내역 또는 사용내역 등
인건비	사업계획서상 참여인력으로 등록되어 해당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지원기업 내부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· 실제 과제 참여기간 및 참여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함
	○ 근로계약서, 급여대장, 급여이체내역, 원천징수 관련 자료 ○ 참여인력 현황, 업무분장 및 과제 참여내역 등
권리화·검증비	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·제품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및 시제품의 성능시험·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·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, 시제품 성능시험·분석비
	○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신청서 및 비용납부 증빙 ○ 시험·분석 의뢰서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○ 시험성적서, 분석결과서 등

□ 실증(PoC) 지원

비목	비목 정의
	증빙서류
실증 인프라비	기술·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장비 임차, 실증시설·현장 사용, 현장 구축 및 테스트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· 실증장비 임차비 · 선박, 항만·터미널, 조선소, 창고, 양식장 등 실증시설·현장 사용료 · 실증제품·장비의 현장 설치·구축·철거비 · 현장 테스트 운영에 직접 필요한 비용
	○ 시설·장비 사용 또는 임차계약서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이체확인증 ○ 시설사용승낙서 또는 사용확인서(해당 시) ○ 실증 현장사진, 장비 사용내역, 설치·철거 사진, 검수조서 등 ※ 실증에 필요한 실증처 및 인프라는 지원기업이 직접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인증· 평가비	실증대상 기술·제품의 성능·품질·신뢰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험·평가·분석 및 공인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
	○ 시험·평가·인증 신청서 또는 계약서 ○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○ 시험성적서, 평가결과서, 인증서 등
데이터· 개선비	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수집·계측·처리·분석 및 실증 결과에 따른 시제품의 제한적 수정·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· 실증 데이터 수집·분석비 · 실증 결과에 따른 시제품 수정·보완비
	○ 계약서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, 이체확인증 ○ 데이터 수집·분석 결과, 계측자료, 로그, 분석보고서 등 ○ 시제품 수정·보완 결과물, 전·후 사진, 검수조서 등 ※ 신규 핵심기술 또는 신규 제품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용은 집행 불가
활동비 및 안전관리비	실증 수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 기술개발활동 및 실증현장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· 기술자문 등 기술개발활동비 · 실증현장 안전보험료
	○ 기술자문 : 자문계획서, 전문가 이력, 자문결과보고서, 지급내역 등 ○ 안전보험 : 보험증권 또는 가입증명서, 보험료 납부내역 등 ※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경영·행정 자문비는 집행 불가